

#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업기업의 세제

세무법인 넥스트 - 조남철 세무사

## (CASE 1 - A 회사)

### 1) 기업 현황

1983년 회사 설립 이래 39년째 돼지 종돈 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종돈판매 업계 1위, 액상유전자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5년 국내 최초 종돈업계 해외 진출하여 베트남에 2곳의 종돈 농장을 운영 중에 있고 작년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 한국의 종돈이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1인당 육류 섭취량은 연간 30kg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새터민들을 돕고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닦는데 수 십년간 노력해오고 있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회사입니다.

- 매도가능증권 : 사료회사, 동물병원 등 거래관계를 위한 투자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같은 종돈회사 또는 자회사로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는 법인의 주식임.

### 2)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과 개정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 ① 비사업용 토지 등 :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
- ② 임대부동산
- ③ 대여금, 가지급금
- ④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보유 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현금
- ⑤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등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범위에 대한 구체화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등

■ 조심-2020-서-1841(2021.02.19.)

1) 조세심판원 결정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쟁점법인이 지주회사처럼 000를 지배하면서 2018년도에 배당금 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유가증권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투자기업이 지분을 000이상 보유하거나 피 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될 뿐이고, 주식발행법인의 배당결의가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고 출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 등은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및 000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같은 뜻임).

## 2) 처분청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등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면 위와 같은 임대부동산 등의 자산들도 회사가 투자·재무활동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서 투자·재무활동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영업활동’을 사실상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활동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될 것이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있어 쟁점지분과 같은 투자자산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012.2.2.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가

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2.2.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표3>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사항

개정 전 (2011)	개정 후 (2012)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재산 범위 <input type="radio"/>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input type="radio"/> 「법인세법」 적용 가업 - 법인의 주식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재산 범위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법인세법」 적용 가업 - 「상증세법」상 법인 주식평가액 × (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투자자산 등은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적용가업과 「법인세법」 적용가업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2012.2.2.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성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 등으로 보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의 형평성이 깨질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개정 취지도 몰각시키게 된다.

개정 전 (2021년)	개정 후 (2022년)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p> <p><input type="checkbox"/>가업상속재산 범위</p> <p>○ (좌 동)</p> <p>○ 「법인세법」 적용 가업</p> <p>- 「상증세법」 상 법인 주식평가액 × (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p> <p>*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li> <li>•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li> <li>• 대여금</li> <li>•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li> <li>•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li> </ul>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p> <p><input type="checkbox"/>가업상속재산 범위</p> <p>○ (좌 동)</p> <p>○ 「법인세법」 적용 가업</p> <p>- 「상증세법」 상 법인 주식평가액 × (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p> <p>*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li> <li>•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li> <li>• 대여금</li> <li>•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li> <li>•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li> </ul> <p>(다만, 다음의 주식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 관련 있는 해외법인 주식</li> <li>- 사업과 관련 있는 국내 자회사 주식</li> </ul> <p>*여기서 사업의 관련 있는 법인이란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매출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입업체를 포함한다.)</p>

\*개정취지 -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의 해외진출을 돕고, 기업구조의 유연함을 확보하여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함.

## (CASE 2 - B 회사)

### 1) 기업 현황

1978년 설립되어 44년째 운영하고 있는 금형 정밀 제작기술을 보유한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업체입니다. 1999년부터는 거래처간의 선물 관행 등을 없애고 공정거래를 해서 관련업체로부터 윤리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를 하다 보니 품질은 더욱 좋아지는 선순환의 정도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회사는 전통적인 국내 기업승계 제조 기업입니다. 44년째 운영되던 가업을 승계하여 경영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이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7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7년간 매출감소 없어야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 모바일 쇼핑 등으로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서 7년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가업승계를 안할 것은 아닌데 가업상속공제를 안하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납부로 기업의 신사업준비 가능성도 감소하고 운전자금 감소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진퇴양난의 길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 2)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개정안

####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가. 승계 받은 가업을 7년간 종사해야 함
- 나. 가업용 자산을 7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야 함
- 다. 지분을 7년 이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라. 7년간 고용유지 요건 또는 총 급여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전 (2021년)	개정 후 (2022년)
<p>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p> <p>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b>7년</b>(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p> <p>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p> <p>라. 매년 기준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급여총액이 감소한 경우</p> <p>마.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b>7년간</b>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p>	<p>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p> <p>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b>5년</b>(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p> <p>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p> <p>라. 매년 기준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급여총액이 감소한 경우</p> <p>마.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b>5년간</b>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p>

## ②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식

기존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 방식

순자산 40%, 순 손익가치 60% 반영하여 주식평가를 함

다만, 순 손익가치 산정 시 기업의 이익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영구 성장할인율 10%적용하여 기업영업이익의 10배수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순 손익 가중치 60%를 반영하면 6배수 영업이익 가중치로 회사를 평가하게 되어 현실보다 고평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M&A시장에서는 2~3배수정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소기업의 성장성은 과거와 같이 않고 제조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업운영 리스크가 크고 사회적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영구 성장할인율을 인상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고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치를 낮춰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세법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정 전 (2021년)	개정 후 (2022년)
<p>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p> <p>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p> <p>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p> <p>*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10%)</p>	<p>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p> <p>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p> <p>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p> <p>*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10%) + 업종별 산업리스크 할인율 (1%~10%)]</p>

<p>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가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li> </ol>	<p>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가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li> <li>5. <b>상속세 신고 결정기한(상속세신고기한+9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 M&amp;A시장에서 거래가 된 경우 해당금액에서 순자산 감소분을 가산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b></li> </ol>
---	--

## < 기업승계 세제 관련 개선안 >

제안자 : 조남철 세무사

순번	내 용	Before	After	비 고
1	가업영위기간	상속일 전후 7년	상속일 전후 5년	일본
2	지분을 보유요건	10년간 계속 50%이상	7년간 계속 30%이상	(독)지분요건 없음
3	대상기업	3천억미만 중견기업까지	상장사 제외	일본 (프)특정업종만
4	공제한도	500억	800억	개선안
5	고용요건	7년간 100% (한번이라도 80%)	고용요건 5년 유지(직원 수 매출연동)	(프)고용요건 없음  (일) 고용의 80%를 5년간 매년 유지해야 하는 요건 -> 5년 평균 80% 유지조건으로 개정  (독)5년간 급여총액이 80%범위내로 줄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6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기	사후	생전	(영) 생전
7	사전증여합산	10년	5년 (사전증여 활성화 차원)	개선안
8	기본 상속공제	10억	30억	(미) 상속세면제한도 1158만달러
9	신청건수 상향목표	80건~100건	1000건	(독) 1만 7천 건
10	주식증여특례	사전 증여세 환급불가	환급가능	기존 증여특례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불가